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고흥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8조)
-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포상대상자 추천 및 이중포상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 수상자명부 등재 및 포상업무지침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예고기간: 2021. 12. 22.~12. 27.(5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59542)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061-830-6065, FAX: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고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원,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군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

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업무 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20 〇〇년 월 일

고흥군의회 의장 ○ ○ ○ (인)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20 〇〇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회장 ○ ○ ○ (인)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20 〇〇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회장 ○ ○ ○ (인)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20 년 월 일부터

지 급 기 간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회장 ○ ○ ○ (인)

공적조서

(앞쪽)

(1)성명	(한글)	(한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		(8)소속	
(9)직급		(10)직위	(11)대외직명 *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속		(18)직위	
(19)직급		(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추 천 관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10px auto;"> (인) </div>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뒤쪽)

주요 경력			
(21) 연월일	(22) 이 력	(23) 연월일	(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월일	(26) 내 용	(27) 연월일	(28) 내 용
(29) 공 적 내 용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명 기관(단체)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고흥군의회의회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고흥군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고흥군의회의회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고흥군의회의회장 귀하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